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5항(우편요금등의후납)에 의거 부과한 우편요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우편요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5항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6. 7. 14.현재)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법인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21837991외 3건	엔하이테*	경기도 김포시 율생 **	1,637,780원	후납우편요금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3]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7월 14일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